

법률의 띄어쓰기

허철구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법률은 띄어쓰기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데 이 변화 속에서 법률의 띄어쓰기가 지나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화 시기의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홍범14조(1895. 1.)나 칙령들은 ‘法律命令은다國文으로本을 삼소漢譯을附히며惑國漢文을混用함’(칙령 85호, 1895)의 예처럼 국한문본에 있어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데 이러한 전통은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진다.

- (1) 犯罪라함은國家의上典이나人民의通義를違背히야公益私益이나公權私權을侵害나壞亂케함이라(형법대전 제616조)

위는 1907년의 당시 법률집이라 할 「신구형사법규대전」(장도 편)의 예로서 역시 띄어쓰기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¹⁾ 이 법률의 띄어쓰기는 ‘胎室界限

1) 최종고(1986)에 의하면 구한말의 법령의 수도 1천 수백 건에 이르는 등 방대하며 법령집도 「法規類編」 등 다수가 있었다. 본고는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참조하였다.

은 大皇帝계와 皇太子계와 皇太孫계는四面三百步며…'(형법대전 제31조)처럼 존귀한 대상의 지칭어 앞을 비우는 형식의 대두법(擡頭法)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난다.²⁾

이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방식은 광복 및 정부 수립 이후에도 법률 문장의 전형으로 이어진다.

- (2) a. 朝鮮北緯三十八度以南의地域과同住民에대한모든行政權은當分間本官의權限下에서施行함(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제1호)
- b. 裁判의對審과判決은公開한다 但安寧秩序를妨害하거나風俗을害할念慮가있는때에는法院의決定으로써公開를아니할수있다(구헌법 제83조)

(2a)는 1945년의 이른바 미군정 포고령이고, (2b)는 1948년의 제헌헌법인데, 모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장과 문장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규칙이었다. 문장 종결의 경우에도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데는 띄어 쓰는 방안이 무척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문장 내에서 종종 모점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그 다음 한 자를 비우는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이다.³⁾⁴⁾ 아래의 미군정

- 2) 문장과 문장 사이의 띄어쓰기는 어떠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각 조문이 거의 대부분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거나 두 문장 이상일 경우에도 다음 문장은 행을 바꾸어 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용법은 일본식 법률 문장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朝鮮法令輯覽追錄』(1916, 조선총독부) 등에서 그러한 일본식 법률 문장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客室, 料理場, 廁等ノ清潔ヲ保持スルコト’(料理屋飲食店營業取締規則 제5조)와 같은 예를 그 전형으로 들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용법이 국(한)문체의 법률 문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 4) ‘형법대전개정초안’에도 이 모점이 사용된 예가 있다. ‘大祀라稱함은 圓丘壇 宗廟 永寧殿 社稷祭를謂호며中祀라稱함은各宮,廟,先農,先蠶,雩祀,文宣王廟,崇義廟,關帝廟,歷代始祖祭를謂함’(제105조). 이 모점이 오늘날 반점과 같은 기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포고령(1948년)과 제헌헌법은 그 예이다.⁵⁾

- (3) a. 被疑者와被告人의辯護人이그拘束의理由를못는境遇에는具體的犯罪事實을알아야한다 辯護人은裁判所, 檢察官, 司法警察官에게被告人또는被疑者를위하여證據를 提出할權利가있다(남조선과도 정부 법령 제176호 제13조)
- b. 國會는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舉에의하여公選된議員으로써組織한다(구헌법 제32조)

참고로 제헌헌법의 경우 전문(前文)은 아래와 같이 절 혹은 구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특이하다.

- (4)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 우리들大韓國民은 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 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이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 …

이는 전문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문이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법률은 엄격하게 붙여 썼으나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띄어쓰기를 준수하였다. 이를테면, 당시의 국회속기록은 진행 상황이나 법안 제출문은 띄어쓰기

당시 교과서 등에서 어절 단위의 모점찍기가 있었는데 이는 띄어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보인다. 주시경 선생이 「월남망국소」(1907)에서 모점 없이 띄어쓰기를 하다가 「국문초학」(1909) 등에서 붙여 쓰는 대신 모점을 사용한 것(서종학 1996:5)도 그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다면 이 경우 모점도 띄어쓰기 대신 사용한 것으로서 대사보다 덜 존귀한 중사의 치칭어들을 높인 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는 미군정 포고령이나 제헌헌법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 5) 이것은 단어 나열뿐만 아니라 문장 접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일단 모점이 쓰이면 그 다음은 띄어 썼다. ‘…記載하여, 大統領이署名한後大統領印을찍고, 國務總理年月日을記載하여, …’(대통령령 제1호 제1조/1948년)

를 하였으나, 제출하는 법률 자체는 엄격하게 붙여 쓰고 있어 법률 문장이 별도로 취급되고 있음을 잘 보여 주기도 한다. 즉 전문은 법률의 본문이 아니라는 데서 일반적인 글쓰기의 형식을 취하고 오히려 본문이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라 특수하게 붙여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띄어쓰기와는 관계없이 본격적인 국(한)문체 법률은 어디까지나 문장 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원칙은 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민현식(1999:166-7)은 띄어쓰기를 분석형·어절형·구형·절형 띄어쓰기로 분류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구형 띄어쓰기는 의존명사와 선행어 등을 구 구조로 묶어 붙여 쓰는 방식이고 절형 띄어쓰기는 절 단위로 띄어 쓰는 방식이다. 60년대 초반 이전까지의 법률은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 굳이 분류하자면 문장형 띄어쓰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하여 법률의 띄어쓰기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규정한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및 1940년과 1946년의 수정안이 어문 규정으로 존재하였음에도 전혀 다른 방식의 띄어쓰기를 함으로써 적어도 띄어쓰기에 관한 한 법률이 어문 규정과 무관하게 독자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 점은 같은 관공서의 글로서 당시의 관보에 수록된 대통령 취임사, 장관 고유문, 성명서, 담화문, 공고 등과 같은 경우는 어절형 띄어쓰기를 보이고, 대통령의 국정 연설문도 적어도 절형 띄어쓰기에 가까운 모습인데,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대통령령, 훈령 등은 엄격하게 붙여 쓰고 있는 데서도 더 분명해진다.

둘째, 어문 규정은 따르지 않았지만 무질서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의 띄어쓰기가 지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같은 법률 내에서도 동일한 예가 불규칙하게 띄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이는 철자법 등에 비하여 주의를 좀 덜 기울이는(일부는 조판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분야라는 데서 이해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일정한 띄어쓰기의 원칙이 있어서 대부분의 법률에 적용된다

는 점은 분명하다.

셋째, 보수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 규정이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띄어쓰기를 시작한 데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또 20세기 초에 이미 일반 글에서 띄어쓰기가 흔해되어 나타나는데도 법률은 붙여 쓰는 방식으로 일관한 점에서도 이러한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법률 문장이 지닌 이러한 독자성과 보수성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하여 법률문의 띄어쓰기는 매우 늦게 실현된다. 사실 법률이 처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어문 생활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한문이 원래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한글도 창제된 이후 오랜 동안 그 한문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만큼 국(한)문체 법률이 붙여 쓰는 전통을 지니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독립신문(1897년)이 띄어쓰기를 주창하고 번역 성경 등에서 띄어쓰기를 보일 때 법률이 즉시 그 경향에 부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띄어쓰기가 정착된 이후에도 그토록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띄어쓰기를 시작한 점은 법률 문장이 지닌 독자성과 보수성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2

법률의 이러한 띄어쓰기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60년대에 들어서서이다. 구체적으로 헌법이 1962년 12월의 전문 개정에서 어절형 띄어쓰기를 하고 있고⁶⁾ 1963년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법률들이 띄어쓰기로 방향을 바꾼다.⁷⁾ 관보를 참조하면 1963년 4월 이후 전면적으로 띄어쓰기가 나타나는데 이와 더불어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6) 문장 종결 다음에 고리점도 사용하고 있다.

7)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헌법의 띄어쓰기가 그 전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때부터 문장 종결 뒤에 온점을 찍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⁸⁾

- (5) a. 司法書士는 성실히 그 義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保全하고 그가 소속하는 司法書士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사법서사법 제16조:1963. 4. 25. 관보)
- b. 이 法은 軍屬에게 適用할 人事行政의 基準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군속인사법 제1조:1963. 5. 1. 관보)

즉 이 시기부터 법률의 글쓰기도 어문 규정의 영역 안에 상당히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장 종결 뒤에 문장 부호를 사용함과 동시에 어절형 띄어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문 규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33년의 통일안과 1940년의 수정안에서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기로 한 것과 달리 1946년 수정안은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록 비명시적이나마 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민현식 1999:184 참조) 이 시기의 법률이 ‘것, 수, 바, 외’ 따위의 일부 의존명사들 혹은 그에 준하는 명사들을 띄어 쓰고 있다는 점도 당시의 어문 규정에 기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 (6) 수행할 것을, 委託할 수, 정하는 바에, 받는 외에, 없는 限, 있을 때에는, 받는 者에게만, 期間 안에, 現行犯人인 경우를(이상 ‘헌법’ 외)

물론 이 시기 의존명사의 띄어쓰기가 완전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즉 법률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이상, 이하, 이내, 등, 중’ 등의 의존명사들만

8) 이러한 변화는 본격적인 법률이 아닌 데서 먼저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대법원판결집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만 띄어 쓸 뿐 문장 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데, 1958년에 이미 전면적으로 어절별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온점은 1965년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보더라도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7) 1月이상 3月이하, 10日이내에, 18歲未滿의, 5年내에, 職員의 拘束등, 現役將校중에서(이상 ‘중앙정보부직원법’ 외)

그러나 종전의 어문 규정에서까지 붙여 쓰도록 한 의존명사를 새 규정에 맞추어 비록 일부나마 띄어 쓴다는 것은 분명 띄어쓰기의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관형사의 띄어쓰기를 엄격히 지킨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꼭 등가로 비교할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의존명사가 띄어쓰기를 충분히 하지는 못하는 것에 비하여 관형사는 그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규범적으로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도 법률이 어문 규정에 무척 가까워졌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 (8) 이 法은, 그 意思에, 새 費目을, 모든 國民은, 다른 法律(이상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외)

결론적으로 이 시기부터 법률은 어절형 띄어쓰기의 모습을 충실히 보여 주어 1946년 수정안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어문 규정의 근본 정신에 법률의 글쓰기가 점차 가까워져 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3

법률이 띄어쓰기에 있어서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를 겪어 왔지만 현행 법률들을 살펴볼 때 여전히 띄어쓰기에 있어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법률마다 제정 시기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현재에 가까운 90년대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더라도 이 점은

잘 나타난다.

현행 법률의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의 관련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출현 빈도가 매우 낮아 용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은 제외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매우 양호하게 지키고 있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법률의 띄어쓰기에서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의존명사는 법률의 띄어쓰기가 개선된 한 징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법률은 띄어쓰기에 관한 한 좀 더 강하게 규정을 준수해 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 예로서 일부 의존명사를 띄어 쓰기 시작하던 시기에도 여전히 붙여 쓰던 ‘이상, 이하, 이내, 등, 중’ 등을 1987년에 전문 개정된 현행 헌법은 ‘5인 이상 11인 이하의, 3分の 2 이상의, 30日 前까지, 禁錮 이상의, 施行 전에, 委員 중에서’처럼 띄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존명사는 여전히 붙여 쓰는 것이 우세한 경향이어서 문제가 된다.⁹⁾ 아래에 그 몇 예만 든다.

- (9) 5인 이상의, 1年이내에(한국은행법), 民法중, 組織과 운영등, 500萬圓 이상의(사회복지사업법), 이 법 施行전에, 罪중(교통사고처리특례법), 1日이상 3年이하, 禁錮이상의(형법), 4촌이내의, 所有權이외의, 登記畢의 通知등(부동산등기법), 目的範圍내에서만, 法令중의(민법) 등.

특히 ‘등’은 조문 제목 등 법률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의존명사

9) 물론 ‘바, 것, 수’ 등의 띄어쓰기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다.

의 띄어쓰기에 한발 앞서 있는 현행 헌법에서조차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 公務員등의 地位’ 따위처럼 앞말에 붙여 쓰듯이 거의 대부분 법률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¹⁰⁾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법률에서 다양한 용례를 볼 수는 없어 무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숫자와 어울리어 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는 ‘다만’ 조항에 기댄다면 ‘3週間, 5人, 1982년 6월 30일, 제34조, 1회, 60퍼센트’(도시계획법 외) 등의 용법이 이 규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¹¹⁾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법률에서 흔히 보이는 표현으로 ‘500萬원’ 등에서 단위명사 ‘원’을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잘못으로 지적된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의 예로서 특히 자주 쓰이는 ‘및, 또는, 기타, 내지’를 들 수 있다. 법률에서 띄어쓰기가 시작된 이래로 이들의 띄어쓰기는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0) 市長 또는 郡守는(도시계획법), 相談·指導·治療·양육 기타 兒童의 福祉에(아동복지법), 第68條 내지 第71條(상법), 자문 및 건의(상공회의소법) 등.

‘등’은 한글 맞춤법이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예지만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이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겠다.

10) 의존명사는 아니지만 ‘당시’ 역시 의존명사에 준한 용법이 많은데 ‘이 法 施行당시의, 이 憲法 施行당시에’ 따위처럼 앞말에 거의 붙여 쓴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문제이다.

11) 연월일 표시에서 단위 명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1995.12.29’처럼 붙여 쓰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이른바 양태나 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은 법률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보조 용언의 범위를 넓혀 ‘(-지) 못하다, (-게) 하다, (-게) 되다’ 등도 포함한다면 법률에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는 ‘同種業種을 하지 못한다(상법), 結果를 發生하게 한(형법), 알게 된 비밀을(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서 보듯 양호하다고 하겠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법률의 제목이 이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법률의 띄어쓰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점은 ‘국도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예처럼 법률의 명칭을 언제나 붙여 쓴다는 점인데,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맞춤법의 대원칙에서 볼 때 이는 분명 온당치 않은 처리이다. 이 방식은 법률의 명칭이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단위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 면에서도 긴 제목의 법률 명칭을 법률 조문 안에서 제시할 때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문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각 단어를 띄어 쓰고 이를 낱표, 씬표 등 문장 부호로 묶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장 부호의 사용이 절제되는 법률의 성격상 아직 크게 고려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것은 조항 번호를 항상 한 단위로 붙여 쓴다는 점이다. ‘제35조제1항제1호’나 ‘동항제5호’와 같이 일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경우에 모두 붙여 쓰는데, 이 역시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법률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이는 법률의 띄어쓰기가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법률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전문 용어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률은 전문 용어가 아님이 확인한 경우에도 붙여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예를 일일이 들기 어려울 정도이나 몇 예만 보인다.

- (11) 기본방향, 협조사항, 일정기간, 지급기준, 의사표시, 검사결과, 업무 집행 등.

어떤 경우에는 법률 자체의 정의 조항에서 그 뜻을 규정함으로써 전문 용어로 인식되고, 그 결과 이와 같은 오용이 확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都市基本計劃이라 함은 …, 都市計劃이라 함은 …, 都市計劃施設事業이라 함은 …, 公用施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보듯 법률에서 장차 사용할 개념들을 정의함으로써 그 표현 자체가 전문 용어처럼 이해되고, 결국 한 단위로 붙여 쓰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은 비록 엄격한 법률적 의미가 아니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말들이어서 이들을 모두 전문 용어로 인정하고 붙여 써야 하는가는 의문인 것이다. 법률에서도 전문 용어는 엄격히 제한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법률의 띄어쓰기는 그동안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해 왔고 현재 상당한 수준에까지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률 문장이 갖는 보수성 때문에 일부 유형들은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에 국어 사용 면의 검토를 거친 법률의 경우도¹²⁾ 양자의 특성을 모두 보여 준다.

12) 2000년에 법제처는 법률한글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률을 어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참고하면 의존명사 ‘등’을 ‘관련단체 등, 해양공간 등, 대륙붕 등’ 따위처럼 띄어 쓰고 ‘이내’ 따위도 ‘25인 이내’처럼 띄어 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선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위안에서, 민법중, 공포후’처럼 여전히 과거의 유형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병폐도 함께 보인다.

‘기본구상, 추진목표, 협동연구개발’ 등 지나치게 붙여 쓰는 명사구의 문제도 여전히며 법률 제목뿐만 아니라 ‘제9조제1항’처럼 조항 번호도 띄어 쓰지 않는 점 역시 아쉽다. 어법적인 심의를 거쳤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예들은 법률의 글쓰기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하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심을 끈다.

법률의 띄어쓰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은 국한문체의 법률이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붙여 썼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어문 규정과 관계없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2. 1960년대 초반부터 띄어쓰기를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어문 규정에 가깝게 변화해 왔다.
3. 현행 법률은 여전히 띄어쓰기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법률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붙여 쓰는 문제, 일부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문제, 전문 용어가 아닌 명사구들을 지나치게 붙여 쓰는 문제 등이 있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연구원(1995), 한국 어문 규정집.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1957), 대법원판결집 제5권.
 대법원 법원행정처(1958), 대법원판결집 제6권.
 대한민국정부, 관보.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法典(1978), 현암사.

法典(2001), 현암사.

서종학(1996), “띄어쓰기의 역사와 규정”, 인문연구(pp. 1-1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장도 편(1907), 신구형사법규대전(上·下).(1989년 문화도서 영인본).

조선총독부(1912),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 대화상회인쇄부.(1989, 문화도서 영인본).

최종고(1986), “개화기의 한국법제사료”, 한국학 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pp. 325-361), 아세아문화사.

한국법제연구회 편(1990), 미국정법령총람.

한상범·연기영(1988), 법학개론, 법문사.